

<제 4 강좌>

지방자치제와 환경문제

강 사 : 박 영 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장 소 : 울산신용협동조합 5층 대회의실

시 간 : 1995년 2월 16일 (목요일) 19:00~21:00

주최:울산환경운동연합 후원:울산신용협동조합

제8기 환경아카데미 자료집 제5호

발행인 / 정보경

편집인 / 한기양

발행일 / 1995. 2. 16

발행처 / 울산시 남울산우체국 사서함 99호

울산환경운동연합

지방자치제와 환경문제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머릿말:

1995년은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해가 될것으로 많은 환경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부로 환경처가 환경부로 그위상이 승격 되었고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4대 선거가 오는 6월에 치루어지는 대로 우리나라의 지방환경관리가 주민의 참여에 의해 책임있게 이루어 지리라는 희망 등이 그것이다.

지역환경 개선과 보전은 물론 지구환경을 바로 잡는 일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제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오늘의 지구환경운동의 표어가 말해주듯이 방대하고 복잡한 지구환경문제도 지구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생활주변에서 작은일에서부터의 실천과 각기의 지역사회를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일 없이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날로 심화되는 환경파괴의 원인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현상에 못지않게 소비과정에서의 환경부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정부가 더욱 크다.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되었던 지구정상회의 이후 유엔이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정부도 합의한 바 있는 브라질 지구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의제21』(Agenda 21) 28장에서 세계의 도시들은 1996년까지 각 도시를 지탱가능한 지역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행동계획인 『지역의제』 21(Local Agenda 21)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은 반드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합의·도출 할 것을 요구하는데에서도 지방자치제 실현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유엔은 세계가 2000년대에 이르면 세계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되며 나머지 50%의 인구도 그들의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계유지를 도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도시화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1994년 6월 24일에서 7월 3일까지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개최되었던 『94지구환경회의』가 “도시와 지탱 가능한 개발”이란 주제로 민간단체를 비롯한 지방정부, 지방의회, 기업 그리고 노조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도시문제를 논의 한 것도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되어진 것이다. “맨체스터 보고서”라고 하는 이회의의 보고서는 유엔의 지탱가능한 발전위원회(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제출되어 오는 1996년에 이스탄불에서 개최예정인 도시정상회의라고 하는 “유엔 정주권 제2차 회의(UN Habitat II Conference)의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울산은 공업화의 과정을 제일 먼저 경험한 곳이어서 오늘날 “산업화 1번지”로 불리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환경부하가 더욱 큰 중공업의 집결지이기도 하여 “공해 1번지” 또는 “공해 백화점”이라는 오명과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환경운동의 시발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단한 투지력으로 오늘의 울산의 환경운동으로 키운것은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만연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힘은 울산시민의 귀중한 자산이며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자산이다. 우리는 앞으로 맞이 하게 될 지방자치시대 그리고 주민자치시대에 있어 울산시민이 어떻게 그 동안에 축적한 잠재능력을 발휘하여 울산을 “쾌적한 도시 1번지”로 만드는나 하는 것을 지켜 보며 귀감으로 삼을 것이다.

I 지방자치제는 사회를 변화시킨다.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지방행정을 하게될 지방자치의 본격화는 행정의 지방화가 이루어지며 주민자치시대가 열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첫째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분권화가 이루어진다. 즉 집권적 행정체제에서 분권적 행정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책임행정이 민주적으로 구현되면서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주민의 주권행사를 올바르게 발휘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다. 이것은 민주주의 본래의 모습으로 참여민주주의가 사회운영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권화의 기본조건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져야 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자주성, 그리고 자립성이 충분히 보장 되어야 한다. 이것은 충분한 권한배분과 더불어 그것에 상응하는 재정배분도 있어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게 된다.

둘째로 지방 분권은 지방 활성화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분권만이 아닌 경제, 사회 그리고 모든 분야의 분권적 체제도 이루어지면서 비롯된다. 도시와 농촌간에, 도시와 도시간에 그동안에 누적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것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는 서울의 현상을 완화 내지는 해소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성있고 다양성 있는 행정은 물론 지역만들기가 가능해 진다. 지역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에 따라 친환경적인 도시정비, 농촌진흥,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을 자립적으로 총 조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원하는 생활환경과 생태적인 지역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시민단체와 경제단체 등의 민간부분의 조직과 활동이 활성화 된다. 그리고 활동양상이 달라진다. 지방자치제는 정부와 정당만의 과제는 아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 민간단체의 협력을 구할 수 밖에 없으며 민간단체들은 적극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여러부분의 전문성도 구비해야 한다. 지자체 실시가 정착된 나라에서의 민간단체들의 의회, 행정부 그리고 기업에 대한 교섭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있을 정도로 활발하고 영향력이 크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그지역의 민간단체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것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도 민간단체의 활동은 중요하다. 환경문제 해결의 열쇠는 민간단체의 압력정도에 달려 있다.

넷째로 지방자치제는 정치풍토의 대전환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당간의 정권다툼의 힘겨루기 정치가 국민 또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정치로 변하게 된다. 정치의 본래 모습은 삶의 조건, 즉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문제는 지역사회의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단체장과 의회의원으로 선출하는가에 따라 그지역의 정치양상이 달라진다. 지난 1991년도 의 의회의원선거에서처럼 지역의 토지개발들을 포함한 개발주의자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각 부문의 전문가 또는 지역사회의 환경인들을 선출할 것인가 하는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광역 단체장 15명, 기초단체장 228명, 광역의회의원 866명 그리고 기초의회의원 4304명을 선출한다. 이들은 모두가 유급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원은 무급이다.) 그들을 보좌하는 유급정치요원을 더하면 우리나라에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활동을 하는사람의 수가 대거 증원되는 것이다. 주민들이 그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주민의 책임있는 주권행사에 포함된다.

프랑스에서 지방자치제가 1884년에 시작이 되었으나 현행 지자체로 정착한것은 13년전이라고 한다. 프랑스사람들을 아직도 그들의 지방자치제가 완성되었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리잡을 것이라는 경고로 들린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이 안고 있는 문제들로 짐작할 수 있다. 자칫 지방자치제가 지역간의 정치적 활거주의가 되며 사회 경제적인 비효율과 지역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의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예방하고 주민의 참여가 확실히 보장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II. 지방자치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난 30년간 “잘살아 보자”는 구호 밑에 추진된 국가중심의 총량적 경제성장정책은 지방의 자치 및 자급능력을 상실하게 하였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 했는가 하면, 지방문화의 특색을 말살시키고 공동체적인 삶을 파괴하였다. 지금까지의 행정에서는 지역생태계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성있고 다양성 있는 행정은 물론 지역만들기가 가능해 진다. 지역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에 따라 친환경적인 도시정비, 농촌진흥,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을 자립적으로 총 조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원하는 생활환경과 생태적인 지역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시민단체와 경제단체 등의 민간부분의 조직과 활동이 활성화 된다. 그리고 활동양상이 달라진다. 지방자치제는 정부와 정당만의 과제는 아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 민간단체의 협력을 구할 수 밖에 없으며 민간단체들은 적극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여러부문의 전문성도 구비해야 한다. 지자체 실시가 정착된 나라에서의 민간단체들의 의회, 행정부 그리고 기업에 대한 교섭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있을 정도로 활발하고 영향력이 크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그지역의 민간단체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것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도 민간단체의 활동은 중요하다. 환경문제 해결의 열쇠는 민간단체의 압력정도에 달려 있다.

넷째로 지방자치제는 정치풍토의 대전환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당간의 정권다툼의 힘겨루기 정치가 국민 또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정치로 변하게 된다. 정치의 본래 모습은 삶의 조건, 즉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문제는 지역사회의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단체장과 의회의원으로 선출하는가에 따라 그지역의 정치양상이 달라진다. 지난 1991년도 의 의회의원선거에서처럼 지역의 토지재벌들을 포함한 개발주의자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각 부문의 전문가 또는 지역사회의 환경인들을 선출할 것인가 하는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광역 단체장 15명, 기초단체장 228명, 광역의회의원 866명 그리고 기초의회의원 4304명을 선출한다. 이들은 모두가 유급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원은 무급이다.) 그들을 보좌하는 유급정치요원을 더하면 우리나라에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활동을 하는사람의 수가 대거 증원되는 것이다. 주민들이 그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주민의 책임있는 주권행사에 포함된다.

프랑스에서 지방자치제가 1884년에 시작이 되었으나 현행 지자체로 정착한것은 13년전이라고 한다. 프랑스사람들을 아직도 그들의 지방자치제가 완성되었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리잡을 것이라는 경고로 들린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이 안고 있는 문제들로 짐작할 수 있다. 자칫 지방자치제가 지역간의 정치적 활거주의가 되며 사회 경제적인 비효율과 지역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의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예방하고 주민의 참여가 확실히 보장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II. 지방자치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난 30년간 “잘살아 보자”는 구호 밑에 추진된 국가중심의 총량적 경제성장정책은 지방의 자치 및 자급능력을 상실하게 하였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 했는가 하면, 지방문화의 특색을 말살시키고 공동체적인 삶을 파괴하였다. 지금까지의 행정에서는 지역생태계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개발대상에 불과했다. 돈은 지방에서 벌고 쓰는 것은 중앙이라는 과정에서 지방에 남겨진 것은 환경파괴였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해서 정치와 행정의 방향을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생활정치와 생활행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역사회의 환경문제가 중요한 정치 및 행정쟁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주민에 의한 지역주도의 지역만들기에서는 지역환경정책이 중요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제가 환경문제에 미치는 영향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극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극소화하는 것이 환경정책에서의 관건이다.

긍정적 기대효과

1. 획일적인 중앙행정체제의 지시와 관료적 행정제도에서 벗어나서 지방환경행정의 자율성과 책임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지역에 맞는 환경기준을 마련하여 환경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다른나라에서는 지방 환경에 관한 조례가 중앙보다 엄격한 경우가 많다.

2. 행정내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환경권을 확보하기위해 주민은 지방환경을 위한 정책수립과 조례제정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며 행정부의 집행을 촉구 또는 감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국민의 압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과도한 개발의욕을 견제해 낼 수 있다.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관광지 개발, 공해산업 유치 등)

3. 반면에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이 불가피 할 경우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4. 환경오염방지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며 책임행정이 가능해 진다. (폐기물 처리, 타지역으로 부터의 오염물질 반입단속 등)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보다 공정하게 해결되는 편익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

1. 환경정책집행과정에 남색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와 행정부간의 역할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재정조달 방법이 불합리 하거나 장비와 인력의 배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때 이같은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환경부하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이다. 재정자립 또는 지역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규제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의 지역차별정책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3. 지방자치 단체간의 과도한 경쟁과 차기선거를 의식한 행정을 펼 우려가 있다. 그럴 경우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실적위주의 사업전개로 환경을 해칠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의 환경정책에 대한 기대가 어려워 진다.

4. 지역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광역 환경관련 기초시설이나 협오시설의 건설이 어려워지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환경관리가 마비되는 등의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럴 경우 중앙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진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자체가 환경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는 운영의 묘를 살릴때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다.

Ⅲ. 지방자치제와 녹색지역만들기

지금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는 그들의 도시를 녹색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녹색지역운동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 의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지자체의 전면실시와 더불어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

리우에서의 지구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물의 하나인 “의제 21”은 21세기를 향한 지구의 지탱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지탱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협력관계의 청사진이다. 그 내용은 자원소비 감축, 폐기물배출 감축,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공해감축 및 방지, 오염지대 정화, 환경훼손 방지, 에너지 관리, 환경우호적 교통수단, 산림과 종의 다양성 보존, 차별과 빈곤 타파, 각 사회집단의 세력화, 인간의 기본인권으로서의 주택문제를 비롯한 생활요건 확보(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무공해 식품 등), 균등한 교육기회 등이다. “의제21”은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제21”의 3분의 2의 행동계획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없이 실현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엔은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를 구성, 각국가들의 “의제21”의 실천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위원회는 각 국가들로 하여금 이에 상응하는 국가별의 위원회를 두고 사업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6년도까지의 2년간 그리고 1996~2000년까지의 5년계획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감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움직임이 정부차원에서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민간단체들이 “지역의제 21 시민포럼”이라는 지역환경행동계획 추진기구를 만들고 각지역의 “의제 21”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지침서를 준비중에 있으며 3월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녹색운동만들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세계에는 이러한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와 지방정부들의 연대와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도시연맹”같은 기구들도 조직되어 세계의 도시행정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도시발전의 새로운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쌍방간의 협력관계인 자매결연이나 국가를 단위로 하는 유엔과도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외국에서의 녹색지역만들기의 사례를 들어보면 가까운 일본의 가와사키시는 “가와사키 신시대 2010계획”이라는 종합계획 아래 “지구시민시대에 있어서 인간도시의 새로운 창조”라는 목표를 세

위 녹색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서 시민들은 “생태감시 25(Eco Check 25)”라는 생태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25개 항목을 설정하고 도시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

미국의 시애틀의 경우 시민들이 전개하는 “지탱가능한 시애틀의 지표 만들기”라는 활동이 돋보인다. 그것은 환경, 인구와 자원, 경제 그리고 문화와 사회문제에 걸친 40개 항목(1993년은 20개 항목)을 해마다 조사, 분석, 발표하는 활동이다. 이 작업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당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며, 문제 해결에의 참여를 유도해 자기가 살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손이 쾌적한 환경에서 현 세대가 누리고 사는 만큼의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지탱가능한 시애틀을 만드는 것이다.

“94지구환경회의”가 열린 영국의 맨체스터 시의 경우 리우회의 이전부터 녹색지역 만들기를 위해 “녹색팀(Green Team)”을 구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금세기 초의 산업혁명의 심장부였으며 일찍부터 공업화 그리고 도시화가 되어 환경파괴현상의 전시장이기도한 맨체스터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맨체스터의회는 “녹색팀”으로 하여금 “맨체스터 의제 21”의 작업을 하도록 해 이미 초안이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계획의 완성을 위한 다각적인 수정작업을 거쳐 지금쯤은 실행단계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떠올리며 환경운동의 선구지역인 울산을 생각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 울산환경연합이 울산의 수질에 대한 환경지도를 만들었던 것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울산의 해양, 농약, 중금속 오염 등 필요한 각 부분에 걸쳐 문제의 원인과 분석, 그리고 대안 제시에 힘쓰고 있는 것은 울산 시민과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성숙도를 엿보게 하는것이어서 앞으로의 울산의 환경에 밝은 전망을 내다보게 한다.

이미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지역의제 21”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일본 카나가와縣

1993년에 공포된 카나가와縣 환경선언은 “현재의 카나가와縣의 자연상태를 후손에게 손상없이 물려주는 것은 현세대의 엄숙한 책임”임을 선언하고 “자연이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여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카나가와縣은 이미 지방의제 21을 완성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정부, 기업체들이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카나가와縣의 지방의제 21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전략적인 목표를 첫째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정착, 둘째 환경친화적 도시의 형성, 셋째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체제의 창조, 넷째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그 목표로 하고 각 목표별 행동원칙을 설정한 후, 각 행동원칙별로 시민, 기업, 시정부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2. 카나가와縣의 Local Agenda21과 시민, 기업, 시정부의 행동지침

기본 목표	행동지침	시민이 해야할 일	기업이 해야할 일	정부가 해야할 일
1.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	가정과 사무실에서의 에너지 보존	-가정전기의 절약 -전원의 완전 차단 -에너지보존의 아이디어를 적용	-사무실에서의 전기의 절약 -냉난방기의 효율적 사용	과동
	쓰레기의 감량	-불필요한 물건구입 자제 -환경친화적 상품의 구매 -쓰레기 줄이기 -종이컵 등 일회용 종이용품의 사용억제	-환경친화적 용품의 구매	과동
	자원보충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신문지와 우유팩의 재활용 -알루미늄, 철캔, 우유병의 재활용 -플라스틱제품의 감소	-사무실 종이의 재활용 -복사지의 재활용 -신문지의 재활용	과동
	운전시 환경을 고려할 것	-버스와 기차의 사용 -좋은 자동차 상태를 유지할 것 -연비 효율적인 운전 -연비가 좋은 자동차의 구입	-좋은 자동차 상태를 유지할 것 -연비 효율적인 운전 -대기오염이 적은 자동차의 개발과 소개	과동
	물의 절약과 재활용	-절수형 수도꼭지의 사용 -물절약방법의 소개	-절수형 수도꼭지의 활용 -효율적인 물사용	
	가정하수의 처리	-잘 처리된 가정하수를 하수구로 흘려보낼 것 -적정량의 세제사용 -정화탱크의 사용		
	환경교육과 활동의 촉진	-환경교육의 촉진	-간부진에 대한 환경교육의 실시	
2. 환경친화적 도시의 형성	도시의 녹색화	-가정주변의 녹색화, 녹색운동의 참여	-회사주변의 담과 옥상의 녹색화 -회사와 공장주변의 녹색화	-녹색지대, 공원, 시내로의 배가운동 -녹색개발프로그램의 추구
	환경친화적인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생태도시의 건설을 위한 원칙의 확립 -물이 잘 침투할 수 있는 도로의 포장 -산사태를 방지하는 식목의 촉진 -도시계획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사용
	도로교통체계의 발전		-상품운반의 수단개발을 촉진	-교통량의 통제를 위한 수단의 개발 -도시지역에 적합한 차량의 구입을 위한 조치 -도로교통제어체계의 발전
	주택과 사무실	-가정에서의 에너지사용 효율화	-건설사업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적인 방법의 사용	-환경공생적인 주택건설에 대한 연구를 촉진 -친환경적인 자치구 관리제반시설의 설계
	미사용 에너지의 사용		-자치구역별 미사용 에너지원의 소개를 촉진 -쓰레기 소각열, 하수오니 처리시의 폐열등을 전기발전과 난방으로 사용 -집단냉방, 난방의 실시	과동

기본 목표	행동지침	시민이 해야할 일	기업이 해야할 일	정부가 해야할 일
3. 환경 과 공존 할 수 있는 사회 체제 의 창조	쓰레기처리 통계		-산업폐기물의 감소	-쓰레기 문제에 대한 종합 적대책의 촉진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형성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 시 스템의 조직과 관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 치
	자원의 효율적 이용		-재활용가능한 상품의 생산 -재활용가능한 에너지 자원 절약적 상품의 개발 -생산자 회수체계의 정비	-자원재활용 모델의 개발과 촉진
	환경관리체계		-관리정책의 확립과 사내환 경보존체계의 확립 -환경친화적 기업프로그램의 발전 -환경보존기술의 개발	
	환경산업의 촉진			-환경보전적인 기업활동의 촉진 -환경보전에 선구적인 기업 에 대한 재정지원
	염화불화탄소의 통제를 촉 진	-염화불화탄소를 사용하는 제품의 구입을 자제	-CFC배출을 억제 -생활활동에 있어서 CFC배 출을 배제	-오존층파괴 방지를 위한 CFC배출 억제를 위한 기 술지침을 고수 -CFC를 사용하지않는 제품 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 원의 제공
4. 환경 문제 에 대한 국제 적 협조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깊은 이해의 촉진		-국제적 환경보전을 위한 자매시와의 협조 -시민들간의 협조를 촉진
	삼림자원의 보호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열 대림의 사용억제 -국제열대림조직에 대한 지 원
	환경보전 기술의 이전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및 자원절약적인 기술의 이전	
	해외기업에 있어서의 환경 에 대한 심각한 고려		-해외기업활동에 있어서 환 경과 오염문제에 대한 보 다 깊은 관심을 가질 것	

Agenda 21 Kanagawa Towards an Eco-Cycle Society in Kanagawa . Guidelines for Global Environmental Preservation. 1993. Yokohama Shi, Japan.

2) 일본 가와사키시

카나가와縣의 가와사키市는 시조례에 이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환경정책을 포함시
키고 있다. 市환경조례에 따르면 가와사키市 환경정책의 원칙은 첫째 대책의 종합성, 둘째 과학적
예측, 셋째 생태계에 대한 고려, 넷째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고려, 다섯째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그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수단을 제시하
고 있다(Yokohama Shi, 1993).

- 새로이 개발되는 산업에 의한 환경오염의 예방, 적절한 쓰레기처리대책

- 자동차 대기오염의 감소, 가정 하수오염의 감소, 일반폐기물처리, 도시간접자본의 구축
- 도시위락시설의 확충(amenities), 도시경관, 문화유적의 보호와 활용
- 생태원칙에 적합한 환경자원의 보존과 창조
-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지역대책의 마련과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실시

이러한 기본수단의 실현을 위해서 가와사키시는 도시구조, 경제활동, 시민생활양식의 변화, 시민참여 방식의 고안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 타도시, 지방행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市長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와사키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환경마스터플랜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 마련시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행정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부시장, 환경관련부서의 시국장으로 구성되는 환경조정회의(City Environmental Coordination Conference)를 설치하여 모든 도시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인지를 검토하게 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가와사키시 환경위원회는 환경행정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진척되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위원회는 시장이나 다른 기관에게 환경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인 이하로 구성되는 同위원회는 시장이 환경관련 전문가중에서 임명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 市條例는 기본계획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현재환경상태, 대책 등에 관한 연간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민은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동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조례는 또한 市가 합법적이고 과학조사 및 연구체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市가 환경관련정보의 제공, 환경기술의 제공,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가와사키시는 구체적인 대기, 수질, 녹지, 자원과 폐기물에 대한 환경목표를 표4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

표 4. 2000년대 가와사키市 환경목표

분 야	환 경 목 표
대기	NO ₂ : 2000년까지 1990년 수준 對比 자동차 배기가스 40%, 공장배출가스 20%를 감축 CO ₂ : 2000년까지 시민생활 및 산업활동으로 인한 CO ₂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 FLON(CFC-11,12,113,114,115): 1995년말까지 국내도시 및 주요공공시설에서의 CFC사용을 1995년말까지 금지, 2000년까지 폐기물에서 CFC회수체계설립
수질	수질: 2000년까지 바람직한 수질의 확보 순환: 시의 물 순환체계를 보존하여 1990년 수준의 지하수 침투능률을 보존
녹지	시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녹지공간(삼림, 농장, 공원, 식수)의 확보
자원 및 폐기물	생활용수의 사용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동결 열대림 목재의 사용을 1990년의 70%수준으로, 1995년까지 열대림 사용목재의 가능한한 최대억제 2000년-2010년까지 생활쓰레기 양을 1990년수준으로 동결

Kawasaki City Basic Environmental Ordinance. (Establish on Dec. 25, 1991)

Kawasaki City Ordinance No. 28.

3) 스페인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지방정부 대표자격으로 UNCED 리우회담, Cities' World Forum(1993, May, Curitiba), Local Governments Summit Meeting(New York Jan, 1993)에 참여했던 스페인의 유일한 도시정부로 Local Agenda 21은 전략적인 목표와 행동계획으로 구성하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차원에서 환경정책을 위한 전략적인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에너지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원의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개인 승용차의 사용을 감소할 것이며

셋째, 시환경기준의 집행과 이행의 강제

넷째, 市 자연환경(natural heritage) 및 공원의 보존(garden areas)

다섯째,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의 증진

여섯째,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환경교육 강화

일곱째, 도시간, 국제적 협조와 의지의 강화 등이다.

이러한 전략적 원칙을 바탕으로 바르셀로나시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사용 효율화, 재활용에너지의 개발

- 시탁아소에 태양열에너지설비 설치로 더운 물 공급, 기술자원, 타당성조사,
- 시의회 주도아래 시빌딩에 대한 에너지감사
- 각 구의회에 시의회의 전문성을 파견
- 각 구에 대한 에너지 감사보고서 발간
- 시예산에 이러한 행동을 위한 예산을 반영
- 스포츠센터에 대한 환경감사
- 시민 에너지위원회 설립 : 독립기술, 과학전문가로 구성, 교통 물공급, 쓰레기 수집에 관여하는 자들의 대표로 구성. 에너지절약과 공공기관, 도로, 시건물, 자동차 등에 대한 에너지 사용감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캠페인, 청정연료 대안을 제시한다.
- 축제기간(크리스마스)중 에너지사용 감소
 - 에너지절약형 전구 사용 - 시의 재정 지원
-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위한 캠페인
 - 청정에너지 캠페인 - 그린피스와 협력
-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세금유인책의 도입
 -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투자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책, 재활용가능한 에너지의 소개
- * 지하수 개발 및 관개용수 절감
 - 시공원과 정원용 물공급, 관개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
 - 단기적 대책 - 관개용지의 제한, 중간 관리층에 대한 효율적 관개용수의 관리를 위한 교육, 주기적인 관개시스템의 점검
 - 중기적 대책 - 지역기후에 적합하고 가뭄에 잘 견디는 수종의 발굴
 - 관개용수 절감계획 - 증발의 방지, 물 누수의 방지
 - 새로운 관개용수 체제의 설립 - 자동관개용수체제의 개발, 밤시간의 이용
- * 폐기물 감량, 재활용, 생산적 순환체제로의 환원
 - 시 전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수거 프로그램 확대
 - 쓰레기의 원천감량, 쓰레기발생에 대한 평가조사, 안전한 폐기
 - 재활용센터 구의 설치 - 시의 각구에 설치, 장애자에 대한 고용기회의 부여
 - compost production(퇴비의 생산) - 가로수, 공원 등에서 나오는 잎 등으로 퇴비를 생산, 재활용 불가능한 도시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 포장재에 대한 실험적인 재활용 프로그램
 - 재활용지를 사용한 상품의 구매, 포장재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 유기농산물의 재배
 - 유기농산물 유통경로의 확보, 계절에 맞는 농산물의 재배
 - 유기물농산물 판매센터의 설치, 생산자 협동조합의 구축
- * 도보의 확대

- 자동차없는 거리의 확대 - 고적지, 해변, 산간도로
- * 자전거이용의 확대
 - 자전거공원 설립, 자전거전용도로 확보, 자전거서비스 센터, 자전거 이용확대를 위한 촉진 대회, 자전거이용 시의 각 지역방문 등, 자전거 축제일 등
- * 공공 교통수단의 확대, 이용강화
 - 통합통근프로그램, 통합교통요금체계의 확립, 환승역의 설치
 - 버스전용차선제, bus right-of-way traffic light, 새 버스의 구입, 장애자를 고려한 버스운영체계의 확립, 대중교통수단 이용 캠페인
- * 개인 승용차 사용의 억제
 - 주요도심 진입로에서 최소한 3인 이상이 승차한 차에 대한 전용차선제(다인승 전용차선제)
 - 개인승용차 도로면적의 축소, 지하 지상 교통수단의 연계요금제도 확립(park and ride system), 도로주차에 대한 엄한 단속
- * 대기질의 개선, 공공용수의 공급, 소음의 감소
 - 산업등록현황 update(원재료, 촉진제, 액체 폐기물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폐기물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
 - 환경 기준의 강화 - 환경에 해가 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의회의 감시, 허가사항에 대한 환경기준의 강화
 - 대기오염 모니터링, 진단, 예측체계의 확립 - 시범지역에 대한 자동측정체계의 수립, 단기 예측체계의 개발
 - 오염지도의 update
 - 승용차, 자동차 매연 감소 - 무공해 연료의 개발, 새로운 내연기관의 개발(전기+내연기관의 변종), 개인 승용차에 대한 매연 억제 및 감시
 - 공공수역 수질 모니터링체계의 개선 - 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감시
 - 소음지도의 update - 도로체계의 개선
 - 소음감소대책 - 소음감소용 포장(도로), 방음장치(쓰레기차, 트럭 등의), 사이렌이나 알람으로부터의 소음감소 방음장치(집). 빌딩규제
- * 연안 수자원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오염 연안에 대한 처리
 - 하수시스템, 정화시설 운영 등.
- * 도시 녹지의 보존과 창조, 도시 토착 동식물 보존
 - 식물원 개발 - 기존의 과학연구원의 연계, 대학과의 연계. 시민의 연계방안을 강구(자원자를 중심으로)
 - 토착식물의 보존과 양성
 - 바르셀로나 지역에 적합한 식물(나무)에 대한 카탈로그 작성 - 등록된 나무의 제거를 금지한다.

- 시의 공원관리에 대한 협조
- 새로운 나무가지치기 기법의 개발
- 마을 정원가꾸기
- 공원창조 프로그램 - 1년에 공원 하나 만들기 프로그램
- * 도시동물에 대한 조사와 유지프로그램
 - 등록된 동물소유자에 대한 서비스
 - 노년층 대상 애완동물 무료 입양제 캠페인
 - 야생동물 조사및 관리 - 비둘기 등
 - 보호동물의 보존과 거래금지 대책
- * 환경기준을 고려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행사의 촉진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시개발정책의 채택
 - 도시경관에 대한 행동
 - 도시개발체와 녹지보존의 형평성 존중 - 중요도시개발계획은 도시환경을 고려하는 기준에 의하여 같이 평가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 건물의 건축과 사용에 있어서 환경질 기준의 강화 - 에너지절약 규제와 빌딩건축규제, 빌딩사용규제를 환경친화적으로 통합하여 규제한다.
- *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운전자들의 공동된 안전을 위한 조치
 - 교통난해소
 - 도로안전프로그램
- * 시 모든 지역에 건강기준의 도입과 작업장에서의 환경기준 개선
 - 환경 및 사회문제로 야기되는 건강상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
 - 작업장에서의 환경조건의 개선
- * 아동과 청년들에 대한 시민 환경교육, 문화교육의 강화
 - 市와 보다 더 친숙해지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교육부와의 협조, 학교 교사들의 모임, 시의 자연적인 유물과 역사적인 유물에 대한 지식을 전파
 - 공원관리와 연계된 환경교육 프로그램
 - 청년들에 대한 환경프로그램개발 : 청년단체, 방학중 환경을 주제로 한 과제
 - 시 환경교육포럼의 개발 : 상설 시환경교육 포럼의 설치
 - 공원과 식물공원 등을 환경교육장으로 활용
 - 동물원에서의 환경교육프로그램
- * 시민의 참여강화와 자원봉사체계의 확립
 - 참여에 대한 지원 - 시 자전거 위원회, 교통위원회, 에너지위원회
 - 자원봉사체제의 촉진
 - 과학 및 대학교와의 협력프로그램
- * 자료관리체계와 정보체계의 확대,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체계의 updating

- 도시환경간행물센터의 설립
- 환경 및 삶의 질과 관련된 市條例의 updating
- 바르셀로나 시의 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의 확보
- 도시환경에 대한 출판 : 도시환경의 발전, 환경교육교재의 발간, 환경시각에서 환경보존을 위한 시의 활동을 소개,
-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촉진대회의 마련
- * 국제협조
 - 개도국과의 협조 프로그램
 - 환경기술의 이전 : 유럽시와 유럽기업들의 연합 conference (도시와 차, 통신서비스, 폐기물재활용)
 - 유럽시와 유럽기업체의 연합 대회
- * 초국가적 유럽환경지침 실현노력과 지침작성에 대한 참여
 - 지구환경회의 참석
 - 국제환경조약 실현노력과 참여

4) 뉴질랜드 웰링턴시(Wellington, New Zealand)

인구 약150만의 웰링턴시는 해변연안지역으로 해양성기후와 바람이 많은 지리적인 특성을 가진 도시이다. 웰링턴시의 보고서는 지방의제21의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 보다는 이의 작성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의 비전과 전략적인 목표 그리고 주요 행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분야들을 제시하면서 이의 작성과정이 지역시민의 참여가 주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웰링턴시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의제21의 형성전략은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환경선언을 작성하며 둘째, 생태계의 관점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도시형성의 모델을 정립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도시비전과 환경선언을 기본으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여기서 지역시민들의 참여과정을 지방의제21의 작성을 위한 핵심적인 과정으로 보고 시장 직속으로 상설위원회의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웰링턴시는 첫째,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관리하고 둘째, 자연환경가치의 우선적 고려 셋째, 인간육구의 충족 넷째, 미래와 현재 세대를 존중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선언에 포함되어야 할 목적으로는 첫째, 의사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환경윤리를 발전시킬 것 둘째, 자원의 효율적 이용 셋째, 오염의 감소, 넷째, 생태적인 통합성의 유지를 들고 있다.

정책 및 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루는 부문은 환경선언과 이에 기초한 지역계획의 작성, 그리고 시민들과의 유대가 전제된 각종 프로그램들이다. 지역계획의 작성은 사업 자체보다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두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계획 개념과는 상이한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계획의 작성은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대화, 정치, 전문가들과의 대화, 이익단체들과의 대화, 회합 등을 거쳐 작성하도록 하며 우선순위도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같이 설정하

도록 하고 있다. 각종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으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자연과 역사적 건축물 및 유적지의 보호를 위한 지역공동체 포럼의 형성,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프로그램, 멸종위기의 종을 위한 삼림의 확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 개념으로 한 교통전략, 그리고 환경모니터링제도 등이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의 개발과 작성에 있어서도 웰링턴시는 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으며 시행정부와 의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준을 연계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5) 영국 맨체스터

맨체스터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관점에서의 원칙들을 확립하고 이들 원칙들에 부합하는 단기적인 행동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맨체스터시는 지속가능 개발팀(Sustainability Team, or Green Team)을 계획부(Planning Department)에 구성하여 지방의제21의 집행을 위한 중추기구로 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위한 유대관계의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즉 지방의제21의 형성은 지방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활발히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각 참여단체들의 동의를 구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성립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업, 지방정부, 무역협회, 교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벤트들을 구상하고 있다. 맨체스터시가 작성한 지방의제21의 원칙 및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칙

- 인간의 활동은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환경에 대한 현재 세대의 문분별한 행동으로 인하여 미래 세대가 부담을 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
- 오염에 대한 사후 처방적인 접근보다는 사전예방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사전예방의 원칙)
- 자원은 재활용가능한 에너지의 사용과 재활용품을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쓰레기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보존되어야 한다.
- 부유한 자들에 의하여 파괴된 환경오염의 부담을 가난한 자들이 짊어져서는 안된다.
- 지구의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은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요구에 선행되어야 한다.
- 환경에 대한 고려는 물론 경제적인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번영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에 대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오염자부담의 원칙).
- 모든 사람이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집행과 관리 책임은 지방정부의 최하위단위에서 부여되어야 한다(subsidiarity principle).

(2) 맨체스터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

맨체스터시의 지방의제21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은 아래와 같다.

□ 대기 및 수질

- 각 수로에 해당되는 지역공동체와 학교가 수질오염원을 파악하고 수질정화 대상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수질감시단체(Water Watch)와 공동노력
- 대기연구 및 정보센터와 연락을 취하여 학교, 유아원 또는 주도로 주변에 대한 대기질의 측정을 위한 연구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시민이 할 일

- 지역공동체의 녹색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계획과 조치의 마련
- 지역학교단위에 의한 녹색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계획과 조치의 마련(학교내의 오염도에 대한 조사, 교육과정에 녹색프로그램을 삽입함으로써 지원)
- 사부문의 환경보존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에 대하여 시의회의 수상제도 마련

□ 시정부가 할 일

- 업무, 빌딩건축, 기타 프로젝트에 대한 市의 허가, 협의와 정보제공의 절차를 지속가능한 개발과 부합하도록 재검토
- 시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지속가능한 개발과 조화가 되도록 재검토
- 시의 공직자들이 작성하는 보고서에 각종 업무의 환경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포함하도록 한다.
- 환경보전을 위한 제3세계들과의 연대에 기반한 프로젝트의 추진
- 환경과 건강을 연계시키기 위한 밀접한 관계의 형성과 유지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식목을 위하여 관련단체와의 밀접한 유대관계 유지
- 개발통제절차에 있어서 모든 참여자들로 하여금 환경 이슈를 감안하도록 한다. 설계, 에너지효율, 폐기물관리, 재활용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고려.
- 구매정책의 재고

□ 에너지절약

- 에너지절약형 조명, 기술적인 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에너지관리조직 설립
-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市의 차량운영에 대한 효율성 감사. 여기서 개발된 모델은 타부문의 차량 운영에 대한 모범으로 전파한다.
- 시가 주도가 된 모범운영사례를 발굴하고 타 부문에 적용한다.
- 자전거의 이용
- 타이어 재활용 프로젝트의 추진
- 사부문과 협동하여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 및 전기 프로젝트의 추진

- 시소유의 빌딩에 대한 에너지 절약 전략의 수립
- 새 보일러와 열통제 프로젝트의 실시
- 대기연구및 정보센터와 협동하에 조사연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조경

- 시의 각 공원, 정원, 도로주변에 대한 경관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과 계획의 수립, 집행
- 시정부의 계획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개념을 주된 요소로 삼입
- 도시설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개념을 주된 요소로 삼입
- 나무심기
- 시부문의 설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칙과 기술을 고려하도록
- 매년 나무심는 수자가 10%씩 증가하도록

□ 쓰레기

- fast food outlets와의 협조하에 쓰레기의 양을 감소
- 슈퍼마켓 운영자들과의 협의하에 쓰레기 양을 감소
- 포장감소를 위한 전국계획의 수립과 촉진
- 쓰레기감소 광고를 전市적으로, 학교를 주요 목표로 한다.

□ 광고 및 홍보

- 환경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
- 어린이, 학생, 기업을 주대상으로 하는 환경관련 책자목록작성과 update
- 지구차원과 지방차원에서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환경중심 서가의 설치
- 시정부 내부용 홍보물을 통한 지속가능개발의 홍보
- 행동계획에 대한 홍보

□ 재활용

- 시정부 재활용 전략의 보완과 발전
- 민간부문과의 협력하에 생태/재활용센터의 설립
- 구세군과 협조하에 의류은행 설치
- 가정폐비화의 실험적 운영
- 재활용 의류 프로젝트

□ 경제의 발전

- 시정부의 지원업무에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
-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및 환경 조언과 감사를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
- 녹색기업의 유치, 고용창출의 가능성 조사
- 환경친화적인 빌딩의 시장성 홍보

- 철도로 접근가능한 산업부지의 파악
- 관광과 환경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 교통

- 버스 우선정책의 마련, 버스운영체제의 개선
- 통합운송전략
- 안전하고 편리한 도보의 확대
- 소규모 도보의 확대
- 안전한 자전거도로의 확대
- 의회,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사친회 등을 포함하는 포럼의 구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장려
- 자전거 이용 거리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IV. 지방자치와 울산환경운동연합(시민단체)의 과제

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울산지역의 환경은 울산환경운동연합(시민단체)이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의 고발 또는 저항적인 운동방식에 추가하여 대안제시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키워내야 한다. 지역의 환경문제 대처의 접근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개발된 지역에서는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서는 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된다. “산업화 1번지”로 불리우는 울산지역의 환경문제 대처는 전자의 접근방식인 환경개선이 우선과제가 될것 같다.

지역사회에서 환경을 지키고 지탱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역사회의 환경지도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시민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만들어낸 울산 수질환경지도는 울산환경지도의 한 부분으로서 아주 유효한 작업이었다. 수질환경지도를 먼저 작성했다는 것은 수질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수질에 이어 해양, 농약, 중금속 오염 등도 조사한다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여기에 울산지역의 환경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은 어떤 종류가 어느 지점에 얼마나 어떤 상태로 처리되고 있는가, 울산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얼마나 되며 그 처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는 무엇인가 등으로 환경과 관련된 그리고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의 당면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환경개선을 위한 전략만이 아닌 더 이상의 악화를 막아내는 예방전략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울산지역의제 21”을 만드는 작업이다.

또 하나의 과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지방자치선거에서 환경친화적이며 민주적인 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작업이다. 입후보한 후보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와의 약속 밑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유권자들을 묶어내야 한다. 민주사회 만드는 일에 있어서의 선거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는 선거가 자주 있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선거를 해마다 치러야 하는 형편에 있다. 금년도에 4대 지방선거, 96년도에는 15대 국회의원선거, 97년에는 대통령 선거, 98년에는 지자제 선거가 있게 된다. 이러한 선거국면에서 주민들의 주권행사가 바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시민운동단체와 환경운동단체의 역할에 달려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지방자치시대 그리고 주민자치시대에 있어 울산지역을 지탱가능한 도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민, 기업 그리고 정부간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시민단체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행정부에게도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유기적인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단과 집단 사이, 지역과 지역 사이, 도시와 농촌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헐어내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수반되는 지역의 재정자립을 이루는 일도 기업의 존재양식에도 시민단체의 새로운 운동양식에도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전문성을 구비하여 대안제시를 할뿐만 아니라 때로는 책임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도력을 묶어내야 한다. 학계, 의회,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가 함께 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자제 실시 국면에서 필히 해야 할 일은 시민을 위한 교육활동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환경관련 정책집행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역효과가 나온 경우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대국민 교육 내지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개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밖에도 지자제 실시를 전후해서 울산환경운동연합이 해야할 과제는 많다. 울산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과제의 우선순서가 정해질 것이다.

맺음말 :

민주화 문제와 함께 환경문제 측면에서 생각할 때 지방자치제는 긍정적인 제도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정부나 기업이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도록 하는 책임과 함께 주민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